

보도시점 2026. 8. 4.(화) 10:00 / 배포 2026. 8. 4.(화) 08:00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 개정 과징금 고시 시행

-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반복 범위반 가중 강화, 감경 사유 정비 등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등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가맹사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 대규모유통업법의 경우 '26년 하반기 중 별도 추진 예정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과징금은 각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부과기준율 등이 낮게 설정되어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되어도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충분한 범위반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율과 부과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중대성 정도를 세분화***하였다.

* (정률과징금) ‘법상 기준금액 × 부과기준율’을 기초로 과징금 산정

** (정액과징금) 법상 기준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정액의 부과기준금액을 기초로 과징금 산정

*** (기존) 3단계 부과체계 → (개정) 4단계 부과체계

[부과기준율 및 부과기준금액 개정안]

하도급법 (기준금액: 하도급 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 비율을 곱한 금액)

위반행위의 중대성	현행			개정안		
	기준표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부과기준금액	기준표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60%~80%	9억~20억원	2.2 이상	90%~100%	18억~20억원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40%~60%	2억~9억원	1.4 이상 2.2 미만	75%~90%	15억~18억원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20%~40%	4천만원~2억원	1.2 이상 1.4 미만	50%~75%	10억~15억원
				1.2 미만	40%~50%	4천만원~10억원

가맹사업법 (기준금액: 위반기간 동안 관련 가맹점사업자에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위반행위의 중대성	현행			개정안		
	기준표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부과기준금액	기준표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1.6%~2.0%	4억~5억원	2.2 이상	1.8%~2.0%	4.5억~5억원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0.8%~1.6%	2억~4억원	1.4 이상 2.2 미만	1.5%~1.8%	3.5억~4.5억원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0.1%~0.8%	5백만원~2억원	1.2 이상 1.4 미만	1.0%~1.5%	2.5억~3.5억원
				1.2 미만	0.1%~1.0%	5백만원~25억원

대리점법 (기준금액: 법 위반금액)

위반행위의 중대성	현행			개정안		
	기준표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부과기준금액	기준표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60%~80%	4억~5억원	2.2 이상	90%~100%	4.5억~5억원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40%~60%	2억~4억원	1.4 이상 2.2 미만	75%~90%	3.5억~4.5억원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20%~40%	5백만원~2억원	1.2 이상 1.4 미만	50%~75%	2.5억~3.5억원
				1.2 미만	40%~50%	5백만원~25억원

아울러, 가맹·대리점분야에서 과징금 부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세부평가 기준표(과징금 고시 별표)’를 일부 개선*하였다.

* (가맹) 가맹본부 규모 반영을 위한 매출액 기준 시점을 ‘위반행위 직전’에서 ‘위반행위 종료일 직전’ 사업년도로 변경

(대리점) 참작사항에 ‘위반행위 유형’, ‘공급업자 규모’ 추가(참작사항: 총 4개→6개)

② 반복 범위반 가중 강화 등

반복 범위반 억제를 위해 과거 5년간 1회의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액이 가중되도록 가중 상한을 대폭 강화하였다.

[반복 범위반 가중 개정안(공통)]

기간	위반횟수 및 가중치 합산점수*	가중비율
과거 5년간	1회 이상 & 2점 이상	40% 초과~50% 이하
	2회 이상 & 3점 이상	50% 초과~70% 이하
	3회 이상 & 5점 이상	70% 초과~90% 이하
	4회 이상 & 7점 이상	90% 초과~100% 이하

* 하도급법은 '위반횟수 및 벌점 누산점수'

참고로, 반복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를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7. 28. 국무회의 통과 후 8.4.부터 시행예정이다.

* 대리점법 시행령은 가중한도가 이미 100%로, 가중한도 관련한 별도 개정 불요

아울러 사업자가 공정위 신고, 분쟁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보복조치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행위의 악의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가중하고 있는데, 대리점분야는 공정거래·유통분야보다 낮은 20%를 가중하고 있어 이를 30%로 상향하였다. 가맹분야는 보복조치에 대한 별도의 가중규정이 없어 30%까지 과징금을 가중하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③ 감경 사유·범위 축소 등

기존에는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와 심의에 협조한 경우 각각 10%(총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조사부터 심의까지 모두 협조한 경우에만 10% 이내로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최대 50%까지 가능하였으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제거하는 것은 범위반 사업자의 당연한 의무임을 고려하여 위반행위 효과를 상당부분 제거한 경우에 한하여 10% 이내로 감경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아울러, 가맹분야의 경우 가벼운 과실에 의한 법위반 행위에 대해 감경 (10% 이내)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이를 삭제하였다.

4 기타 조문 정비

그 외에도 어려운 법령 용어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순화하거나 설명을 추가하고, 복수 표현 간 띄어쓰기나 용어 등이 상호 불일치하던 것을 일치시키는 등 조문을 정비하였다.

이번 개정에 따라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이 실질적으로 강화되어, 사업자의 법 위반 유인을 억제하고 보다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붙임> 1.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2. 가맹사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3. 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담당 부서	기업협력정책관 기업거래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선희 (044-200-4945)
		담당자	사무관	황상우 (044-200-4952)
담당 부서	기업협력정책관 가맹거래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동명 (044-200-4990)
		담당자	사무관	한정원 (044-200-4994)
담당 부서	기업협력정책관 유통대리점정책과	책임자	과 장	구태모 (044-200-4960)
		담당자	사무관	송지원 (044-200-4963)

<과징금 고시>

현행	개정안																																																				
IV. 과징금의 산정기준 1. 기본산정기준 나. 기본산정기준은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도출한다. <table><tr><th>중대성의 정도</th><th>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th><th>부과기준율</th></tr><tr><td>매우 중대한 위반행위</td><td>2.2 이상</td><td>60% 이상 80% 이하</td></tr><tr><td>중대한 위반행위</td><td>1.4 이상 2.2 미만</td><td>40% 이상 60% 미만</td></tr><tr><td>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td><td>1.4 미만</td><td>20% 이상 40% 미만</td></tr></table> (단서 생략) 다.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 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본산정기준을 도출한다. <table><tr><th>중대성의 정도</th><th>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th><th>부과기준금액</th></tr><tr><td>매우 중대한 위반행위</td><td>2.2 이상</td><td>9억원 이상 20억원 이하</td></tr><tr><td>중대한 위반행위</td><td>1.4 이상 2.2 미만</td><td>2억원 이상 9억원 미만</td></tr><tr><td>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td><td>1.4 미만</td><td>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td></tr></table>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60% 이상 8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40% 이상 60%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20% 이상 40% 미만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9억원 이상 20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IV. 과징금의 산정기준 1. 기본산정기준 나. ----- ----- ----- <table><tr><th>중대성의 정도</th><th>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th><th>부과기준율</th></tr><tr><td>매우 중대한 위반행위</td><td>2.2 이상</td><td>90% 이상 100% 이하</td></tr><tr><td>중대한 위반행위</td><td>1.4 이상 2.2 미만</td><td>75% 이상 90% 미만</td></tr><tr><td rowspan="2">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td><td>1.2 이상 1.4 미만</td><td>50% 이상 75% 미만</td></tr><tr><td>1.2 미만</td><td>40% 이상 50% 미만</td></tr></table> (단서 현행과 같음) 다. ----- ----- ----- ----- <table><tr><th>중대성의 정도</th><th>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th><th>부과기준금액</th></tr><tr><td>매우 중대한 위반행위</td><td>2.2 이상</td><td>18억원 이상 20억원 이하</td></tr><tr><td>중대한 위반행위</td><td>1.4 이상 2.2 미만</td><td>15억원 이상 18억원 미만</td></tr><tr><td rowspan="2">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td><td>1.2 이상 1.4 미만</td><td>10억원 이상 15억원 미만</td></tr><tr><td>1.2 미만</td><td>4천만원 이상 10억원 미만</td></tr></table>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90% 이상 10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75% 이상 90%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2 이상 1.4 미만	50% 이상 75% 미만	1.2 미만	40% 이상 50% 미만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18억원 이상 20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15억원 이상 18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2 이상 1.4 미만	10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2 미만	4천만원 이상 10억원 미만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60% 이상 8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40% 이상 60%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20% 이상 40% 미만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9억원 이상 20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90% 이상 10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75% 이상 90%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2 이상 1.4 미만	50% 이상 75% 미만																																																			
	1.2 미만	40% 이상 50% 미만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18억원 이상 20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15억원 이상 18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2 이상 1.4 미만	10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2 미만	4천만원 이상 10억원 미만																																																			
IV. 과징금의 산정 2. 1차 조정	IV. 과징금의 산정 2. 1차 조정																																																				

현행	개정안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의한 조정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의한 조정
과거 3년 간(신고사건의 경우 신고 접수일 기준, 직권조사의 경우 자료 제출요청일, 출석요청일, 현장조사 실시일 중 가장 빠른 날 기준)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 다음과 같이 기본산정기준에 가중한다. 과거 시정조치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시정조치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의결 당시 취소판결, 직권취소 등이 예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 5년 간 ----- ----- ----- ----- 1회 이상 ----- ----- ----- ----- ----- ----- -----
(1) 과거 3년 간 4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4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50 이내	(1) -- 5년 ----- ----- ----- 7점 ----- 100분의 90 초과 100분의 100 이하
(2) 과거 3년 간 4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40 이내	(2) -- 5년 -- 3회 ----- ----- --- 5점 ----- 100분의 70 초과 100분의 90 이하
(3) 과거 3년 간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이내	(3) --- 5년 - 2회 ----- ----- -- 3점 ----- 100분의 50 초과 100분의 70 이하

현행	개정안
경우 : 100분의 30 이내 (다) 위 (가) 및 (나)에 해당하지 아니 <u>하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제거하</u> <u>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u> <u>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위반행위</u> <u>의 효과가 제거되지 않은 경우 :</u> <u>100분의 10 이내</u> (라) 위 (가) 내지 (다)의 자진시정이 조사가 개시된 이후 또는 심사보 고서의 송부 이후에 이루어진 경 우에는 각각 감경률을 축소할 수 있다. (2) 조사에 협력한 경우 (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 의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 위사실을 인정하여 위법성 판단 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 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 (나) 심사관의 조사 단계 이후라도 위 원회의 심리 종결 전에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 이 되는 추가자료를 제출하거나	----- 10 ---- <u><삭 제></u> (나) 위 (가)----- ----- ----- ----- --- (2) ----- (가) ----- ----- ----- ----- ----- ----- -----<u>경우(다만, 위반행위가</u> <u>계속되는 경우에는 심리 종결시까지 그</u> <u>위반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한함)</u> : --- ----- 10 ----- <u><삭 제></u>

현행	개정안
진술을 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4.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중략)...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략)... 조정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과 관련한 감경은 ...(중략)... 단순히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5조의4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로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 ----- ----- ----- ----- ----- ----- ----- 제103조 ----- ----- -----
<신 설>	부칙 <제2026-13호, 2026. 8. 4.>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과징금 고시>

현 행	개 정 안
II. 정의 1. ~ 2. (생 략) 3. <u>가맹본부의 고의·과실에 따른 조정</u> “가맹본부의 고의·과실 등에 따른 조정“(이하 “2차 조정“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각 고려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가맹본부의 고의·과실 등 행위자요소,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재차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4. ~ 10. (생 략) III.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1. (생 략) 2. 위 1. 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반 가맹본부가 과거 5년간 <u>2회</u>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시정조치의 대상이 아닌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u>3점</u>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당해 행위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자진시정 등의 이유로 경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IV. 과징금의 산정 1. 산정기준 가. ~ 나. (생 략) 다.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II. 정의 1. ~ 2. (현행과 같음) 3. <u>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등에 따른 조정</u>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등에 따른 조정” ----- <u>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가맹본부의 조사협력</u> ----- -----. 4. ~ 10. (현행과 같음) III.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1. (현행과 같음) 2. ----- ----- <u>1회</u> ----- ----- ----- <u>2점</u> ----- ----- ----- ----- IV. 과징금의 산정 1. 산정기준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 -----.

현 행	개 정 안
1) 과거 5년간 2회 이상 범위로 조치 (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3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이내 2) 과거 5년간 3회 이상 범위로 조치 (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5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40 이내 3) 과거 5년간 4회 이상 범위로 조치 (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7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50 이내 3. 2차 조정 다음 가. 내지 라.에서 정한 감경사유가 인정 되는 경우에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빼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감경되는 금액은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70 범위 내이어야 한다. 가. 조사·심의협조 등 1) 위원회의 조사 단계에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2) 위원회의 심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심리 종결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	<u>합산이 2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40 초과 100분의 50 이하</u> 2) ----- ----- -----50 <u>초과 100분의 70 이하</u> 3) ----- ----- -----70 <u>초과 100분의 90 이하</u> 4) ----- ----- -----90 <u>초과 100분의 100 이하</u> 3. 2차 조정 ----- <u>가중 또는 감경사유</u>----- ----- <u>가중비율의 합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한 비율을</u> ----- ----- <u>더하거나 빼는</u> ----- ---. ---, <u>가중 또는 감경되는</u> ----- -----. 가. 조사·심의협조 등 ----- <u>조사·심의 단계에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하고 심리 종결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다만, 위반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심리 종결시까지 그 위반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한 함) : 100분의 10 이내 감경</u>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나. 사건절차규칙 제69조제1항에 따라 소 회의를 약식심의 결과를 수락한 경우 : <u>100분의 10 이내</u>, 다만 이 경우 위 가. 2)의 감경사유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00분의 10이내에서 추가 감경 할 수 있다.	나.----- ----- - <u>100분의 10 이내 감경.</u> ----- <u>가.의</u>----- ----- -----.
다.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생략)	다.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현행과 같음)
1) 피해의 원상회복 등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한 경우 : <u>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내</u>	1) ----- <u>상당부분</u> ----- : <u>100분의 10 이내 감경</u>
2) <u>위반행위의 효과를 상당부분 제거한 경우 :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30 이내</u>	<삭 제>
3) 위 1) 및 2)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위 반행위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위반행위 효과가 제거되지 않은 경우 : <u>100분의 10 이내</u>	<삭 제>
4) 위 1) 내지 3)의 자진시정이 조사가 개시된 이후 또는 심사보고서의 송부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각 감경 률을 축소할 수 있다.	<u>2) -- 1)의</u> ----- ----- ----- -----.
라. <u>위반행위가 통상의 업무 수행 중 발생 할 수 있는 가벼운 과실에 의한 것임 이 명백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u>	<삭 제>
<신 설>	<u>라. 위반 가맹본부가 법 제12조의5(보복 조치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 100분의 30 이내 가중</u>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부칙 <제2026-12호, 2026. 8. 4.></u> <u>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u> <u>터 시행한다.</u> <u>제2조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전에</u> <u>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u> <u>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u> <u>따른다.</u>

<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 신·구조문 대비표 >

2. 위반행위 유형별 세부평가 기준표

가. 가맹금 예치 의무 등 위반행위(법 제6조의5제1항·제4항)

현행						개정안							
부과수준 참작사항			비중	상(3점)	중(2점)	하(1점)	부과수준 참작사항			비중	상(3점)	중(2점)	하(1점)
위반행위내용	위반행위 중대성	0.2	(생략)	(생략)	(생략)	위반행위 내용	위반행위 중대성	0.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피해 발생 정도	0.3	(생략)	(생략)	(생략)	피해 발생 정도	0.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위반행위정도	위반건수	0.3	(생략)	(생략)	(생략)	위반행위정도	위반건수	0.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위반가맹금 규모*	0.2	(생략)	(생략)	(생략)		위반가맹금 규모	0.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가맹본부 규모	0.1	· 위반 가맹 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	· 위반 가맹 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인 경우	· 위반 가맹 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매출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맹본부 규모	0.1	· 위반 가맹 본부의 위반행위 종료일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	· 위반 가맹 본부의 위반행위 종료일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인 경우	· 위반 가맹 본부의 위반행위 종료일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매출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 위반행위 1건당 예치 의무 대상 가맹금 규모를 의미(단, 위반행위 건별로 예치 의무 대상 가맹금 규모가 다른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함)													
* (현행과 같음)													

2. 나. 정보공개서등 제공의무 위반행위(법 제7조 제3항)

현행						개정안					
참작사항		부과수준 비중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부과수준 비중	상(3점)	중(2점)	하(1점)
위반행위내용	위반행위중대성	0.4	(생략)	(생략)	(생략)	위반행위내용	위반행위중대성	0.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피해발생정도	0.2	(생략)	(생략)	(생략)		피해발생정도	0.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위반행위정도	위반건수	0.3	(생략)	(생략)	(생략)	위반행위정도	위반건수	0.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가맹본부규모	0.1	·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	·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인 경우	·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매출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맹본부규모	0.1	· 위반 가맹본부의 <u>위반행위 종료일</u>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	· 위반 가맹본부의 <u>위반행위 종료일</u>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 원 미만인 경우	· 위반 가맹본부의 <u>위반행위 종료일</u>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매출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다. 허위·과장 및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법 제9조제1항)

현행						개정안						
부과수준 참작사항		비중	상(3점)	중(2점)	하(1점)	부과수준 참작사항		비중	상(3점)	중(2점)	하(1점)	
위반행위내용	허위·과장, 기만적인 정보의 내용	0.3	(생략)	(생략)	(생략)	위반행위내용	허위·과장, 기만적인 정보의 내용	0.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정보제공의 방법 및 정도	0.2	(생략)	(생략)	(생략)		위반행위정단	가맹본부 규모	0.1	·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종료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	·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종료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인 경우	·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종료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매출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피해 발생 정도	0.2	(생략)	(생략)	(생략)							
위반행위정단	관련 가맹점 사업자 수	0.2	(생략)	(생략)	(생략)	위반행위정단	관련 가맹점 사업자 수	0.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가맹본부 규모	0.1	·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	·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인 경우	·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매출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라. 가맹금 반환의무 위반행위(법 제1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참작사항		부과수준 비중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부과수준 비중	상(3점)	중(2점)	하(1점)
위반행위내용	위반행위 중대성	0.4	(생략)	(생략)	(생략)	위반행위내용	위반행위 중대성	0.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피해발생 정도	0.2	(생략)	(생략)	(생략)		피해발생 정도	0.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위반행위정도	위반건수	0.3	(생략)	(생략)	(생략)	위반행위정도	위반건수	0.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가맹본부 규모	0.1	위반 가맹 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	위반 가맹 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인 경우	위반 가맹 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매출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맹본부 규모	0.1	위반 가맹 본부의 <u>위반행위 종료일</u>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	위반 가맹 본부의 <u>위반행위 종료일</u>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인 경우	위반 가맹 본부의 <u>위반행위 종료일</u>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 원 미만인 경우(매출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마. 가맹계약서 제공의무 등 위반행위(법 제11조제1항·제2항)

현행						개정안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참작사항		비중			
위반행위내용	위반행위 중대성	0.4	(생략)	(생략)	(생략)	위반행위내용	위반행위 중대성	0.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피해발생 정도	0.2	(생략)	(생략)	(생략)		위반행위내용	피해발생 정도	0.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위반행위정도	위반건수	0.3	(생략)	(생략)	(생략)	위반행위정도		위반건수	0.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가맹본부 규모	0.1	· 위반 가맹 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	· 위반 가맹 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 억 원 이상 500 억원 미만인 경우	· 위반 가맹 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 억 원 미만인 경우(매출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맹본부 규모	0.1	· 위반 가맹 본부의 위반행위 종료일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 억 원 이상인 경우	· 위반 가맹 본부의 위반행위 종료일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 억 원 미만인 경우	· 위반 가맹 본부의 위반행위 종료일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 억 원 미만인 경우(매출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바. 불공정거래행위(법 제12조제1항)

현행						개정안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참작사항		비중			
위반행위내용	위반행위의 중대성	0.2	(생략)	(생략)	(생략)	위반행위내용	위반행위의 중대성	0.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피해 발생 정도	0.2	(생략)	(생략)	(생략)		피해 발생 정도	0.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위반행위정도	지역적 범위	0.1	(생략)	(생략)	(생략)	위반행위정도	지역적 범위	0.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 등*의 규모	0.4	(생략)	(생략)	(생략)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 등*의 규모	0.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가맹본부 규모	0.1	·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	·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매출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맹본부 규모	0.1	·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종료일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	·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종료일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종료일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매출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 상품 또는 용역을 의미						* (현행과 같음)					

2. 사.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등 행위(법 제12조의2제1항·제2항)

현행						개정안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참작사항		비중				
위반행위내용	위반행위의 중대성	0.3	(생략)	(생략)	(생략)	위반행위내용	위반행위의 중대성	0.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부당이익 발생 정도	0.2	(생략)	(생략)	(생략)		위반행위내용	부당이익 발생 정도	0.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위반건수	0.2	(생략)	(생략)	(생략)			위반행위내용	위반건수	0.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위반행위정도	점포환경개선 소요비용*	0.2	(생략)	(생략)	(생략)	위반행위정도			점포환경개선 소요비용*	0.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가맹본부 규모	0.1	·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	·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인 경우	·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위반행위정도		가맹본부 규모	0.1	·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중료일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	·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중료일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인 경우
	* 점포환경개선을 위해 소요되는 가맹점 사업자의 전체 비용을 의미하며, 점포환경개선을 시행한 가맹점사업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평균 소요비용을 의미											* (현행과 같음)

2. 아.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법 제12조의3제1항·제2항)

현행						개정안					
참작사항		부과수준 비중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부과수준 비중	상(3점)	중(2점)	하(1점)
위반행위내용	위반행위 중대성	0.4	(생략)	(생략)	(생략)	위반행위내용	위반행위 중대성	0.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피해발생 정도	0.2	(생략)	(생략)	(생략)		피해발생 정도	0.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위반행위정도	위반건수	0.3	(생략)	(생략)	(생략)	위반행위정도	위반건수	0.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가맹본부 규모	0.1	· 위반 가맹 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	· 위반 가맹 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인 경우	· 위반 가맹 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매출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맹본부 규모	0.1	· 위반 가맹 본부의 <u>위반행위 종료일</u>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	· 위반 가맹 본부의 <u>위반행위 종료일</u>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인 경우	· 위반 가맹 본부의 <u>위반행위 종료일</u>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 원 미만인 경우(매출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자.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행위(법 제12조의4)

현행						개정안					
참작사항		부과수준 비중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부과수준 비중	상(3점)	중(2점)	하(1점)
위반행위내용	위반행위 중대성	0.4	(생략)	(생략)	(생략)	위반행위내용	위반행위 중대성	0.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피해발생 정도	0.2	(생략)	(생략)	(생략)		피해발생 정도	0.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위반행위정노	위반건수	0.3	(생략)	(생략)	(생략)	위반행위정노	위반건수	0.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가맹본부 규모	0.1	· 위반 가맹 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	· 위반 가맹 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인 경우	· 위반 가맹 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매출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맹본부 규모	0.1	· 위반 가맹 본부의 <u>위반행위 종료일</u>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	· 위반 가맹 본부의 <u>위반행위 종료일</u>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인 경우	· 위반 가맹 본부의 <u>위반행위 종료일</u>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매출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차. 보복조치(법 제12조의5)

현행						개정안					
참작사항		부과수준 비중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부과수준 비중	상(3점)	중(2점)	하(1점)
위반행위내용	위반행위중대성	0.4	(생략)	(생략)	(생략)	위반행위내용	위반행위중대성	0.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피해발생정도	0.4	(생략)	(생략)	(생략)		피해발생정도	0.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위반행위정도	가맹본부규모	0.1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인 경우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매출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위반행위정도	가맹본부규모	0.1	위반 가맹본부의 <u>위반행위 종료일</u>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	위반 가맹본부의 <u>위반행위 종료일</u>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인 경우	위반 가맹본부의 <u>위반행위 종료일</u>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매출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카.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의무 위반행위(법 제12조의6제1항)

현행						개정안					
참작사항		부과수준 비중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부과수준 비중	상(3점)	중(2점)	하(1점)
위반행위내용	위반행위의 중대성	0.4	(생략)	(생략)	(생략)	위반행위내용	위반행위의 중대성	0.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부당이익 발생 정도	0.3	(생략)	(생략)	(생략)		부당이익 발생 정도	0.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위반행위정도	관련가맹점사업자 수	0.2	(생략)	(생략)	(생략)	위반행위정도	관련가맹점사업자 수	0.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가맹본부 규모	0.1	·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	·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인 경우	·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매출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맹본부 규모	0.1	· 위반 가맹본부의 <u>위반행위 종료일</u>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	· 위반 가맹본부의 <u>위반행위 종료일</u>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인 경우	· 위반 가맹본부의 <u>위반행위 종료일</u>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매출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2. 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방해행위(법 제14조의2제5항)

현행						개정안					
참작사항		부과수준 비중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부과수준 비중	상(3점)	중(2점)	하(1점)
위반행위내용	위반행위의 중대성	0.4	(생략)	(생략)	(생략)	위반행위내용	위반행위의 중대성	0.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피해발생 정도	0.2	(생략)	(생략)	(생략)		피해발생 정도	0.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위반행위정단	관련가맹점사업자 수	0.3	(생략)	(생략)	(생략)	위반행위정단	관련가맹점사업자 수	0.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가맹본부 규모	0.1	·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	·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인 경우	·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매출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맹본부 규모	0.1	· 위반 가맹본부의 <u>위반행위 종료일</u>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	· 위반 가맹본부의 <u>위반행위 종료일</u>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인 경우	· 위반 가맹본부의 <u>위반행위 종료일</u>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 원 미만인 경우(매출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2. 파. 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행위(법 제15조의2제3항 · 제6항)

현행						개정안					
참작사항		부과수준 비중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부과수준 비중	상(3점)	중(2점)	하(1점)
위반행위내용	위반행위의 중대성	0.4	(생략)	(생략)	(생략)	위반행위의 중대성	위반행위의 중대성	0.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피해 발생 정도	0.2	(생략)	(생략)	(생략)	위반행위 내용	피해 발생 정도	0.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위반행위정도	위반건수	0.3	(생략)	(생략)	(생략)	위반행위정도	위반건수	0.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가맹본부 규모	0.1	·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	·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인 경우	·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매출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맹본부 규모	0.1	·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	·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 원 미만인 경우	·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매출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현행	개정안
I. 목적 이 고시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과징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과징금 부과기준) 제3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II. 정의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조정기준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조정기준“이란 영 별표 2 제2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u>기본산정기준</u>을 조정한 금액을 말한다.(이하 “1차 조정기준“이라 한다.) 4. 부과과징금 “부과과징금“은 2차 조정기준에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u>당해</u>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 밖의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반영하여 위반사업자에게 최종적으로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I. --- ----- ----- ----- ----- <u>제19조</u> ----- ----- ----- ----- II. --- 2. ----- ----- ----- ----- <u>기본 산정</u> <u>기준을</u> ----- ----- 4. ----- ----- ----- ----- <u>해당</u> ----- ----- ----- ----- ----- -----

현행	개정안
5. 위반기간 가. (생략) 나. 위반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등의 위반행위 종료일은 아래와 같다. (1) 위반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u>당해</u>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2) 위반행위가 2일 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u>당해</u> 위반행위의 유형·성격·목적·동기, 연속되지 아니한 기간의 정도와 이유, 위반행위의 효과, 시장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되, 이와 같은 복수의 행위 중 가장 나중에 있었던 행위의 종료일을 전체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3) (생략)	5. ----- 가. (현행과 같음) 나. ----- ----- ----- -----. (1) ----- ----- ----- <u>해당</u> ----- ----- -----. (2) ----- ----- ----- <u>해당</u> ----- ----- ----- ----- ----- ----- ----- ----- -----. (3)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1개 사건에서 2개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가장 중한 조치수준에 해당하는 점수를 말한다. 1) (생략) 2) 위 표의 고발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29조의 고발요청에 따른 고발을 포함한다. 다. (생략) 9. 조사 개시일(IV.2.나. 관련) 가. 법 제27조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공정거래법 제80조제2항의 신고에 따라 조사가 개시된 경우에는 해당 신고가 접수된 날을 의미한다. 나. (생략) IV. 과징금의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생략) 나. 기본 산정기준은 법 위반금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도출한다.	-----. ----- ----- -----. 1) (현행과 같음) 2) ----- <u>법 제33조</u>----- ----- ----- ----- -----. 다. (현행과 같음) 9. ----- 가. ----- <u>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80조제2항</u>----- -----. 나. (현행과 같음) IV. ----- 1. ----- 가. (현행과 같음) 나. ----- ----- -----.

현행

개정안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60% 이상 8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40% 이상 60%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20% 이상 40% 미만

다. 법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 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본산정기준을 도출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4억원 이상 5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5백만원 이상 2억원 미만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조정(1차 조정)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의한 조정

조사 개시일로부터 과거 5년간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 합계가 2점 이상인 경우 다음과 같이 기본산정기준을 가중한다.

(1) 과거 5년간 4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가중치 합계가 7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

(2) 과거 5년간 3회 법 위반으로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90% 이상 10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75% 이상 90%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2 이상 1.4 미만	50% 이상 75% 미만
	1.2 미만	40% 이상 50% 미만

다. -----

기본 산정기준-----.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4억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3억 5천만원 이상 4억 5천만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2 이상 1.4 미만	2억 5천만원 이상 3억 5천만원 미만
	1.2 미만	5백만원 이상 2억 5천만원 미만

2. -----

나. -----

(현행과 같음)

(1) -----

- 90 초과 ----- 100 이하

(2) -----

현행	개정안
조치를 받고 가중치 합계가 5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u>40 이상</u> 100분의 <u>60 미만</u>	----- ----- <u>70 초과</u> ----- <u>90 이하</u>
(3) 과거 5년간 2회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가중치 합계가 3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u>20 이상</u> 100분의 <u>40 미만</u>	(3) ----- ----- ----- <u>50 초과</u> ----- ----- <u>70 이하</u>
(4) 과거 5년간 1회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가중치 합계가 2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u>10 이상</u> 100분의 <u>20 미만</u>	(4) ----- ----- ----- <u>40 초과</u> ----- ----- <u>50 이하</u>
3. 위반행위의 성격, 자진 시정 등에 따른 조정(2차 조정)	3. -----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위반사업자가 법 제12조(보복조치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 100분의 <u>20</u> 이내 가중	나. ----- ----- ----- <u>30</u> -----
다. 감경사유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다. ----- -----.
(1)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1) -----
(가) 위반행위로 인한 대리점 피해의 <u>원상 회복</u> 등 위반행위의 효과를 <u>실질적으로</u> 제거한 경우 : 100분의 <u>30 이상</u> 100분의 <u>50</u> 이내	(가) ----- ----- <u>상당부분을 원상회복하는 등</u> ----- <u>상당부분</u> ----- ----- <u>10</u> ----- -----
(나) 위반행위로 인한 대리점 피해를 <u>50% 이상</u> 구제하거나 위반행	<삭 제>

현행	개정안
<u>위의 효과를 상당부분 제거한 경우 :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30 이내</u> <u>(다) 위 (가) 및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위반행위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위반행위 효과가 제거되지 않은 경우 : 100분의 10 이내</u> <u>(라) 위 (가) 내지 (다)의 자진시정이 조사가 개시된 이후 또는 심사보고서의 송부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각 감경률을 축소할 수 있다.</u> <u>(2) 조사·심의에 협력한 경우</u> <u>(가) 위원회의 조사 단계에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u> <u>(나) 위원회의 심의의 신속하고 효</u>	<u><삭 제></u> <u>(나) -- (가)-----</u> <u>-----</u> <u>-----</u> <u>----- 감경률-----</u> <u>-----.</u> <u>(2) 위원회의 조사·심의 단계에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하고 심리 종결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다만,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심리 종결시까지 그 위반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한함) : 100분의 10 이내</u> <u><삭 제></u> <u><삭 제></u>

현행	개정안
<u>율적인 운영에 적극협조하고 심리 종결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10 이내</u> (3) (생략) 4.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생략) (1)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을 고려하여 2차 <u>조정된 산정기준</u>에서 감액하되, 이하 모든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100분의 50 이내에서만 감액할 수 있다. (가) (생략) 1)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u>자본잠식</u> 상태에 있는 경우 2차 <u>조정된 산정기준</u>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2)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i)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하거나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면서 같은 업종[「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제조업의 경우 중분류 기준에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1) ----- ----- <u>조정기준</u> ----- -----. (가) (현행과 같음) 1) ----- ----- <u>자본잠식(적자로 인해 자본 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적어지는 현상)</u> ----- <u>조정기준</u>-----. 2) ----- ----- ----- ----- ----- ----- -----

현행	개정안
따른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 평균의 1.5배를 초과하고 (ii)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면서 (iii) 2차 <u>조정된 산정기준</u>이 잉여금 대비 상당한 규모인 경우 2차 <u>조정된 산정기준</u>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3) 위 1),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2차 <u>조정된 산정기준</u>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나) 다음의 조정사유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모든 경우를 합치더라도 2차 <u>조정된 산정기준</u>의 100분의 10 이내에서만 감액할 수 있다. 1) (생략) 2)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따른 조정은 개별 위반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가격인상 요인 및 인상정도, 위반행위의 전후 사정,	----- ----- ----- ----- <u>조정기준</u> ----- ----- ----- <u>조정기준</u> ----- ----- -----. 3) ----- ----- <u>조정기준</u> ----- ----- -----. (나) ----- ----- ----- <u>조정기준</u> ----- -----. 1) (현행과 같음) 2) ----- ----- ----- ----- ----- -----

현행	개정안
해당 산업의 구조적 특징,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되, 처분의 개별적·구체적 타당성을 <u>기하기</u> 위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을 고려하여 2차 <u>조정된 산정기준</u>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서 감액할 수 있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등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가)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 능력에 따른 조정은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위반사업자의 <u>자본잠식율</u>이 50% 이상인지 여부, 또는 다음의 세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면서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하지 않고서는 위반사업자가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 ----- ----- ----- ----- <u>도모하기</u> ----- -----. (2) ----- ----- <u>조정기준</u> ----- ----- ----- ----- ----- ----- ----- -----. (가) ----- ----- ----- ----- <u>자본잠식률</u> ----- ----- ----- ----- ----- ----- ----- -----.

현행	개정안
(나) 다음의 조정사유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모든 경우를 합하더라도 2차 <u>조정된 산정기준</u>의 100분의 10 이내에서만 감액할 수 있다. 1) (생략) 2) 그 밖의 사유에 따른 조정은 위반사업자의 사업규모 또는 매출규모 대비 2차 <u>조정된 산정기준</u> 비율 등을 다른 위반사업자와 비교한 결과 추가 감경 없이는 비례·평등 원칙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위반사업자는 2차 <u>조정된 산정기준</u>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경영 및 자산상태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 등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위반사업자는 ‘현실적 부담능력’이나 ‘시장 또는 경제여건’과 관련하여 2차 <u>조정된 산정기준</u>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실적 부담능력’	(나) ----- ----- ----- <u>조정기준</u>----- -----. 1) (현행과 같음) 2) ----- ----- ----- <u>조정</u> <u>기준</u> ----- ----- ----- ----- -----. (3) ----- <u>조정기준</u>----- ----- ----- ----- -----. ----- ----- <u>조정기준</u>----- ----- ----- ----- -----.

현행	개정안
입증과 관련해서는 개별 또는 별도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상 과징금액이 충당부채, 영업외비용 등에 미리 반영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여 다시 작성한 재무제표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u><신 설></u>	----- ----- ----- ----- ----- -----. <u>부칙 <제2026-11호, 2026. 8. 4.></u> <u>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u> <u>제2조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u>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

2. 참작사항별 점수 및 비중치

현행					개정안					
부과점수		3점(상)	2점(중)	1점(하)	부과점수		3점(상)	2점(중)	1점(하)	
참작사항	비중				참작사항	비중				
위반행위 부당성	0.4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 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 정도가 현저히 큰 경우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 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 정도가 보통인 경우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 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 정도가 경미한 경우	위반행위 내 용	·경영활동 간섭 금지(법 제10조), 보복조치의 금지(법 제12조) 위반행위	·구입강제 행위의 금지(법 제6조), 경제상의 제공 강요행위의 금지(법 제7조), 판매 목표 강제 행위의 금지(법 제8조), 불이의 제공행위의 금지(법 제9조) 위반행위	·주무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법 제11조) 위반행위		
									위반행위 부당성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 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 정도가 현저히 큰 경우
대리점이 입은 피해 정도	0.2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리점이 도산하는 등 대리점의 경영상황을 현저히 악화시킨 일이 발생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리점의 당기순이익·영업수익을 악화 등 대리점의 경영상황을 상당히 악화시킨 일이 발생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리점의 경영상황 악화정도가 경미한 경우		위반행위 정 도	·3개년 평균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경우	·3개년 평균 매출액이 2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인 경우		
위반 법 조문의 수	0.2	·동시에 3개 이상의 법 조문을 위반한 경우	·동시에 2개의 법 조문을 위반한 경우	·1개의 법 조문을 위반한 경우			공급업자 규모	0.1		
피해 대리점의 비율	0.2	·위반행위 당시 거래하고 있는 전체 대리점 중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의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위반행위 당시 거래하고 있는 전체 대리점 중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의 비율이 30% 이상 70% 미만인 경우	·위반행위 당시 거래하고 있는 전체 대리점 중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의 비율이 30% 미만인 경우	대리점이 입은 피해 정도		0.1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리점이 도산하는 등 대리점의 경영상황을 현저히 악화시킨 일이 발생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리점의 당기순이익·영업수익을 악화 등 대리점의 경영상황을 상당히 악화시킨 일이 발생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리점의 경영상황 악화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 대리점의 비율	0.1	·위반행위 당시 거래하고 있는 전체 대리점 중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의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위반행위 당시 거래하고 있는 전체 대리점 중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의 비율이 30% 이상 70% 미만인 경우	·위반행위 당시 거래하고 있는 전체 대리점 중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의 비율이 30% 미만인 경우	피해 대리점의 비율	0.1	·위반행위 당시 거래하고 있는 전체 대리점 중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의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위반행위 당시 거래하고 있는 전체 대리점 중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의 비율이 30% 이상 70% 미만인 경우	·위반행위 당시 거래하고 있는 전체 대리점 중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의 비율이 30% 미만인 경우	